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2월 26일 한윤석, 한선재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3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한선재 의원)

□ 제안이유

-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을 규정 함.(안 제3조)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우선 설치, 이용의 대상, 센터의 사업, 사업비의 지원 및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부터 제9조까지)
-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의 타당성에는 동의했지만 조문에 대해 상당부분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 담당부서장 및 팀장과 다시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크게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음.
○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지원되는 사업외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과 예산 지원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음.
○ 조례가 제정되어도 집행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개발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봄. (이상 한선재 의원)
○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따라 하위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시의 방침은?	○ 3개월간 최저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 이용아동들이 대체시설로 갈 수 있는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잘 알겠음. (이상 가정복지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548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안년월일 : 2010. 3. 15.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강제조항을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하도록 완화함.

2. 수정 주요골자

- 센터운영 전반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는 센터장의 의무규정을 관계 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하도록 수정함.(안 제16조 제1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제2항 중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를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6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u>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u>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지도·감독)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 ----- <u>관계</u> <u>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u> -----.</p>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아동센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5.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6.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업무담당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
 3. 교육청 업무담당국장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아동센터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5. 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2.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5.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프로그램
6.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7. 그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인건비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90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10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업무담당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업무담당국장 및 부천시보건소장
3. 교육청 업무담당국장

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6.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7.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4.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반영 여부
6.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하여는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 급식청결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